

## 투자설명서 변경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1. 변경 대상 펀드

NO	펀드명칭
1	프랭클린 골드 적립식 증권 투자신탁(주식)
2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1호
3	프랭클린템플턴 뉴섹션 포커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4	프랭클린템플턴 브라질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
5	프랭클린 장기주택마련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1호
6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3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7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
8	프랭클린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1호
9	프랭클린템플턴 파워리서치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2. 변경 사항

#### 프랭클린 골드 적립식 증권 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b>또는 간이투자설명서</b> 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 반영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정보 갱신
제2부. 8. 나. 투자 제한	○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이하 생략))	○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거래소가 개설하는 <b>증권시장별로</b>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이하 생략))	개정 자본시장법 반영
제2부. 13.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갱신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b>금융비용 및</b>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발행분담금 총액	개정 자본시장법 반영

	있습니다.	<u>중 회계기간 초일부터 2013.8.28.까지의 부분은 펀드가 부담하고, 2013.8.29. 이후 분은 자산운용사가 부담)</u>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정보 갱신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u>나이스채권평가</u> <a href="http://www.nicepricing.co.kr">www.nicepricing.co.kr</a>	<u>NICE P&amp;I</u> <a href="http://www.nicepni.com">www.nicepni.com</a>	채권평가회사 사명 변경 반영
제 5 부. 1. 가. (2) ② 의결권 행사방법	<p>-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p> <p>-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p> <p><u>(추가)</u></p>	<p>-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p> <p>-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u>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u></p> <p><b>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b></p>	개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반영

		<p><u>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u></p> <p><u>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u></p> <p><u>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u></p> <p><u>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u></p>	
<p>제 5 부. 1. 가. (2) ③ 연기수익자총회</p>	<p>- 집합투자업자는 <u>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u>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p> <p>-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u>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u>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u>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u> 결의합니다.</p>	<p>- 집합투자업자는 <u>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u>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p> <p>-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u>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u></p>	
<p>제 5 부. 1. 가.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p>	<p>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p>	<p>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p>	

	<p><u>(추가)</u></p>	<p>① <u>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u></p> <p>② <u>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 합병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u></p> <p>③ <u>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u></p> <p>④ <u>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p> <p>⑤ <u>투자신탁의 합병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제외)</u></p>	
<p>제 5 부. 1. 가. (4) 반대 매수청구권</p>	<p><u>법 제188조제2항각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u></p>	<p>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p> <p>① <u>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u></p> <p>② <u>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u></p>	

		<u>수를 청구하는 경우</u>	
제5부. 1. 라. 손해배상책임	해당 증권의 <u>인수계약을 체결한 자</u> ,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u>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u>	해당 증권의 <u>인수인 또는 주선인</u> ,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u>매출인</u>	
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u>(추가)</u>	※ 소규모투자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u>법제89조제1항제5호 및 제192조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관련 법령 및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에 명시된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보하며, 임의해지가 결정된 경우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 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합니다. 판매회사는 상환금등을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아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u>	개정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 반영
제 5 부. 3. 가.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u>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u>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u>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u>	
제 5 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u> 으로 표시한 경우	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u> 으로 표시한 경우	개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반영
제 5 부. 3. 나.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u>(추가)</u>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 및 <u>법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u> )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u>(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u>	

		<b>는 제외)</b>	
<b>제 5 부. 3. 나. (3) 집합 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 에 관한 공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li> <li>-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li> <li>-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b>및 그 사유</b></li> <li>-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b>및 그 사유</b></li> <li>-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li> </ul>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1호**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문서전반	<u>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1호</u>	<u>프랭클린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1호</u>	펀드 명칭 변경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b>간이투자설명서</b> 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 반영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b>(추가)</b>	<b>2014년 3월:</b> <u>펀드명칭 변경 : 프랭클린템플턴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1호 → 프랭클린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1호</u>	펀드 명칭 변경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정보 갱신
제2부. 8. 나. 투자 제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 ( <u>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이하 생략)</u> )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 ( <u>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이하 생략)</u> )	개정 자본시장법 반영
제2부. 13.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갱신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	개정 자본시

	<p>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에 <b>금융비용 및</b>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b>발행분담금 총액 중 회계기간 초일부터 2013.8.28.까지의 부분은 펀드가 부담하고, 2013.8.29. 이후 분은 자산운용사가 부담</b>)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장법 반영</p>
<p>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p>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p>정보 갱신</p>
<p>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amp; 라. 운용자산규모</p>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p>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p>	<p><b>나이스채권평가</b> <a href="http://www.nicepricing.co.kr">www.nicepricing.co.kr</a></p>	<p><b>NICE P&amp;I</b> <a href="http://www.nicepni.com">www.nicepni.com</a></p>	<p>채권평가회사 사명 변경 반영</p>
<p>제 5 부. 1. 가. (2) ② 의결권 행사방법</p>	<p>-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p> <p>-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b>(추가)</b></p>	<p>-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p> <p>-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b>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b></p>	<p>개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반영</p>

		<p><u>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u></p> <p><u>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 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u></p> <p><u>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u></p> <p><u>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 일 것</u></p> <p><u>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u></p>	
<p>제 5 부. 1. 가. (2) ③ 연기수익자총회</p>	<p>- 집합투자업자는 <u>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u>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p> <p>-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u>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u>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u>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u> 결의합니다.</p>	<p>- 집합투자업자는 <u>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u>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p> <p>-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u>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u>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u>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u> 결의합니다.</p>	



<p>제 5 부. 1. 가. (3) 투자 자총회 결의사항</p>	<p>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 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u>(추가)</u></p>	<p>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 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u>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 상</u> <u>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 합병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 외)</u> <u>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 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는 제외)</u> <u>④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 된 중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u>⑤ 투자신탁의 합병 (소규모 투자 신탁의 합병 제외)</u></p>	
<p>제 5 부. 1. 가. (4) 반대 매수청구권</p>	<p><u>법 제188조제2항각호외의 부분 후단 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 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 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 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 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 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 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u></p>	<p><u>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 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 니다.</u> <u>①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 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 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 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 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로 한정)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 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u> <u>②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 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u></p>	

		<u>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u>	
제5부. 1. 라. 손해배상책임	해당 증권의 <u>인수계약을 체결한 자</u> ,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u>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u>	해당 증권의 <u>인수인 또는 주선인</u> ,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u>매출인</u>	
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u>(추가)</u>	※ 소규모투자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u>법제89조제1항제5호 및 제192조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관련 법령 및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에 명시된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보하며, 임의해지가 결정된 경우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 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합니다. 판매회사는 상환금등을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아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u>	개정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 반영
제 5 부. 3. 가.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u>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u>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u>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u>	
제 5 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u> 으로 표시한 경우	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u> 으로 표시한 경우	개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반영
제 5 부. 3. 나.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 <u>및 법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u> )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u>추가</u> )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u>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u> )	
제 5 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li> <li>-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li> <li>-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u>및 그 사유</u></li> <li>-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u>및 그 사유</u></li> <li>-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li> </ul>	

프랭클린템플턴 뉴셀렉션 포커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문서전반	프랭클린템플턴 뉴셀렉션 포커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프랭클린 뉴셀렉션 포커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펀드 명칭 변경
	프랭클린템플턴 뉴셀렉션 포커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프랭클린 뉴셀렉션 포커스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이 펀드가 투자하는 모펀드 명칭 변경 반영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u>간이투자설명서</u> 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 반영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u>추가</u> )	<b>2014년 3월:</b> 펀드명칭 변경 : 프랭클린템플턴 뉴셀렉션 포커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프랭클린 뉴셀렉션 포커스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펀드 명칭 변경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정보 갱신
제2부. 8. 나. 투자 제한	○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 ( <u>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이하 생략)</u> )	○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 <u>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이</u>	개정 자본시장법 반영

		하 생략)	
제2부. 13. 나. 집합투자 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갱신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 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 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 에 <u>금융비용 및</u>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u>발행분담금 총액 중 회계기간 초일부터 2013.8.28. 까지의 부분은 펀드가 부담하고, 2013.8.29. 이후 분은 자산운용사 가 부담</u> )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개정 자본시 장법 반영
제 3 부. 집합투자기구 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 에 관한 사항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정보 갱신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라. 운용자산규모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제4부. 6. 가. 회사의 개 요	<u>나이스채권평가</u>  <u>www.nicepricing.co.kr</u>	<u>NICE P&amp;I</u>  <u>www.nicepni.com</u>	채권평가회사 사명 변경 반 영
제 5 부. 1. 가. (2)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 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 성으로 결의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 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 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 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 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 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 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 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 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 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u>다만,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u>	개정 자본시 장법 및 시행 령 반영

		<p><u>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u></p> <p><u>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 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u></p> <p><u>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u></p> <p><u>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u></p> <p><u>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u></p>	
<p>제 5 부. 1. 가. (2) ③ 연기수익자총회</p>	<p>- 집합투자업자는 <u>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u>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p> <p>-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u>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u></p>	<p>- 집합투자업자는 <u>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u>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p> <p>-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u>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u></p>	

	<p>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p>	<p>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p>	
<p>제 5 부. 1. 가.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p>	<p>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u>(추가)</u></p>	<p>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① <u>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u> ② <u>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 합병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u> ③ <u>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u> ④ <u>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⑤ <u>투자신탁의 합병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제외)</u></p>	
<p>제 5 부. 1. 가. (4) 반대매수청구권</p>	<p>법 제188조제2항각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p>	<p>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p>	

		<p><u>총회의 결의일부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u></p> <p>② <u>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u></p>	
제5부. 1. 라. 손해배상책임	해당 증권의 <u>인수계약을 체결한 자</u> ,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u>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u>	해당 증권의 <u>인수인 또는 주선인</u> ,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u>매출인</u>	
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u>(추가)</u>	<p>※ <u>소규모투자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법제89조제1항제5호 및 제192조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관련 법령 및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에 명시된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보하며, 임의해지가 결정된 경우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 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합니다. 판매회사는 상환금등을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아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u></p>	개정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 반영
제 5 부. 3. 가.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③ <u>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u>	③ <u>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u>	
제 5 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u> 으로 표시한 경우	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u> 으로 표시한 경우	개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반영
제 5 부. 3. 나.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p>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p> <p>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b>(추가)</b></p>	<p>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 및 <b>법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b></p> <p>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b>(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b></p>	
<p>제 5 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li> <li>-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li> <li>-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b>및 그 사유</b></li> <li>-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b>및 그 사유</b></li> <li>-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li> </ul>	

프랭클린템플턴 브라질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문서전반	<p><u>프랭클린템플턴 브라질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u></p> <p><u>프랭클린템플턴 브라질 증권 모투자신탁(주식)</u></p>	<p><u>프랭클린 브라질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u></p> <p><u>프랭클린 브라질 증권 모투자신탁(주식)</u></p>	<p>펀드 명칭 변경</p> <p>이 펀드가 투자하는 모펀드 명칭 변경 반영</p>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p>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u>간이투자설명서</u>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개정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 반영</p>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p><b>(추가)</b></p>	<p><b>2014년 3월:</b>  <u>펀드명칭 변경 : 프랭클린템플턴 브라질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 → 프랭클린 브라질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u></p>	<p>펀드 명칭 변경</p>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p>정보 갱신</p>



제2부. 8. 나. 투자 제한	<p>○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 (<u>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u>,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이하 생략)</p>	<p>○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 (<u>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별로</u>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이하 생략)</p>	개정 자본시장법 반영
제2부. 13.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u>금융비용 및</u>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u>발행분담금 총액 중 회계기간 초일부터 2013.8.28.까지의 부분은 펀드가 부담하고, 2013.8.29. 이후 분은 자산운용사가 부담</u>)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p>	정보 갱신  개정 자본시장법 반영
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p>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에 의하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u>2013년 12월 31일까지</u>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p>	<p>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에 의하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u>2014년 12월 31일까지</u>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p>	손익상계 연장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정보 갱신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라. 운용자산규모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p><u>나이스채권평가</u>  <a href="http://www.nicepricing.co.kr">www.nicepricing.co.kr</a></p>	<p><u>NICE P&amp;I</u>  <a href="http://www.nicepni.com">www.nicepni.com</a></p>	채권평가회사 사명 변경 반

			영
<p>제 5 부. 1. 가. (2) ② 의결권 행사방법</p>	<p>-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 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 성으로 결의합니다.</p> <p>-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 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 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p>	<p>- <u>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 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 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 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 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u></p> <p>-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 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 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 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u>다만,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 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 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 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u></p> <p><u>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 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화·전신·팩 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 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 사되지 아니하였을 것</u></p> <p><u>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 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u></p> <p><u>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 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 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u></p>	<p>개정 자본시 장법 및 시행 령 반영</p>

		<p><u>일 것</u></p> <p><u>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u></p>	
<p>제 5 부. 1. 가. (2) ③ 연기수익자총회</p>	<p>- <u>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u>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p> <p>-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u>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u>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u>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u> 결의합니다.</p>	<p>- <u>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u>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p> <p>-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u>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u>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u>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u></p>	
<p>제 5 부. 1. 가. (3) 투자 자총회 결의사항</p>	<p>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u>(추가)</u></p>	<p>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p> <p>① <u>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u></p> <p>② <u>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u></p> <p>③ <u>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u></p>	

		<p>④ <u>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p> <p>⑤ <u>투자신탁의 합병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제외)</u></p>	
<p>제 5 부. 1. 가. (4) 반대 매수청구권</p>	<p><u>법 제188조제2항각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u></p>	<p>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p> <p>① <u>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u></p> <p>② <u>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u></p>	
<p>제5부. 1. 라. 손해배상책임</p>	<p>해당 증권의 <u>인수계약을 체결한 자</u>,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u>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u></p>	<p>해당 증권의 <u>인수인 또는 주선인</u>,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u>매출인</u></p>	
<p>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p>	<p>(추가)</p>	<p>※ <u>소규모투자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법제89조제1항제5호 및 제192조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관련 법령 및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계약</u></p>	<p>개정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 반영</p>

		<p><u>에 명시된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보하며, 임의해지가 결정된 경우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 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합니다. 판매회사는 상환금등을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아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u></p>	
제 5 부. 3. 가.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u>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u>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u>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u>	개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반영
제 5 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u> 으로 표시한 경우	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u> 으로 표시한 경우	
제 5 부. 3. 나.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u>추가</u> )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 <u>및 법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의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u> 변경되는 경우 제외)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u>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u> )	
제 5 부. 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u>및 그 사유</u>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u>및 그 사유</u>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	-------------------------	--

프랭클린 장기주택마련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1호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정보 갱신
제2부. 13. 나. 집합투자기 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 용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갱신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 한 사항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정보 갱신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제 5 부. 1. 가. (2) ② 의결 권 행사방법	<p><u>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u></p> <p>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 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p> <p>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 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 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p> <p><u>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u></p>	<p><u>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 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 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화·전신 ·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 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 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u></p> <p>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 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p> <p>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 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p> <p><u>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 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 을 따를 것</u></p>	개정 자본시장 법 시행령 반 영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3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문서전반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3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프랭클린 재팬 3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펀드 명칭 변경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증권 모두자신탁(주식)	프랭클린 재팬 증권 모두자신탁(주식)	이 펀드가 투자하는 모펀드 명칭 변경 반영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u>간이투자설명서</u> 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 반영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b>2014년 3월:</b> 펀드명칭 변경 :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3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 프랭클린 재팬 30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펀드 명칭 변경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정보 갱신
제2부. 13.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갱신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u>금융비용 및</u>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u>발행분담금 총액 중 회계기간 초일부터 2013.8.28.까지의 부분은 펀드가 부담하고, 2013.8.29. 이후 분은 자산운용사가 부담</u> )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 반영
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에 의하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b>2013년 12월 31일까지</b>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에 의하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b>2014년 12월 31일까지</b>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	손익상계 연장

	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정보 갱신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라. 운용자산규모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u>나이스채권평가</u> <a href="http://www.nicepricing.co.kr">www.nicepricing.co.kr</a>	<u>NICE P&amp;I</u> <a href="http://www.nicepni.com">www.nicepni.com</a>	채권평가회사 사명 변경 반영
제 5 부. 1. 가. (2) ② 의결권 행사방법	<p>-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p> <p>-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u>(추가)</u></p>	<p>-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p> <p>-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u>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u></p> <p>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 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p>	개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반영



		<p><u>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u></p> <p><u>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u></p> <p><u>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u></p> <p><u>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u></p>	
<p>제 5 부. 1. 가. (2) ③ 연기수익자총회</p>	<p>- 집합투자업자는 <u>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u>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p> <p>-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u>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u>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u>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u> 결의합니다.</p>	<p>- 집합투자업자는 <u>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u>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p> <p>-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u>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u>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u>10분의 1 이상의 수로</u> 결의합니다.</p>	
<p>제 5 부. 1. 가.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p>	<p>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추가)</p>	<p>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p>	

		<p>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 상</p> <p>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 합병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p> <p>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p> <p>④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⑤ 투자신탁의 합병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제외)</p>	
<p>제 5 부. 1. 가. (4) 반대 매수청구권</p>	<p>법 제188조제2항각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p>	<p>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p> <p>①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p> <p>②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p>	

제5부. 1. 라. 손해배상책임	해당 증권의 <u>인수계약을 체결한 자</u> ,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u>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u>	해당 증권의 <u>인수인 또는 주선인</u> ,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u>매출인</u>	
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u>(추가)</u>	※ 소규모투자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u>법제89조제1항제5호 및 제192조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관련 법령 및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에 명시된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보하며, 임의해지가 결정된 경우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 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합니다. 판매회사는 상환금등을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아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u>	개정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 반영
제 5 부. 3. 가.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u>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u>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u>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u>	
제 5 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u> 으로 표시한 경우	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u> 으로 표시한 경우	개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반영
제 5 부. 3. 나.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u>(추가)</u>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 <u>및 법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u>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u>(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u>	

<p>제 5 부. 3. 나. (3) 집합 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li> <li>-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li> <li>-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b>및 그 사유</b></li> <li>-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b>및 그 사유</b></li> <li>-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li> </ul>	
--	---	---	--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문서전반	<p><u>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u></p> <p><u>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증권 모두자신탁(주식)</u></p>	<p><u>프랭클린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u></p> <p><u>프랭클린 재팬 증권 모두자신탁(주식)</u></p>	<p>펀드 명칭 변경</p> <p>이 펀드가 투자하는 모펀드 명칭 변경 반영</p>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u>간이투자설명서</u> 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 반영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u>(추가)</u>	<p><b>2014년 3월:</b></p> <p><u>환헤지 예외 조항 추가 및 펀드명칭 변경 : 프랭클린템플턴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 → 프랭클린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u></p>	펀드 명칭 변경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정보 갱신
제2부. 8. 가. 투자 대상	<u>(추가)</u>	<p><b>(3) 집합투자업자는 외화로 표시되는 모두자신탁의 환매금액의 범위 내에서 환매 기준가 적용일과 환매대금 지급일 사이의 환율변동 위험을 헤지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국내외 유가증권시장등에서 거래되는 통화선물, 통화옵션 및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거래되는 이와 유사한 거래(이하 "통화관련파생상품</b></p>	예외적 환헤지 허용

		<p>) 를 통해 환혜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p>	
제2부. 13.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정보 갱신
	<p>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u>금융비용 및</u>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u>발행분담금 총액 중 회계기간 초일부터 2013.8.28.까지의 부분은 펀드가 부담하고, 2013.8.29. 이후 분은 자산운용사가 부담</u>)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p>	개정 자본시장법 반영
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p>중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에 의하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b>2013년 12월 31일까지</b>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p>	<p>중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에 의하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b>2014년 12월 31일까지</b>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p>	손익상계 연장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정보 갱신
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라. 운용자산규모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	<p><u>나이스채권평가</u> <a href="http://www.nicepricing.co.kr">www.nicepricing.co.kr</a></p>	<p><u>NICE P&amp;I</u> <a href="http://www.nicepni.com">www.nicepni.com</a></p>	채권평가회사 사명 변경 반

			영
<p>제 5 부. 1. 가. (2) ② 의결권 행사방법</p>	<p>-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 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 성으로 결의합니다.</p> <p>-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 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 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p>	<p>- <u>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 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 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 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 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u></p> <p>-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 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 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 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u>다만,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 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 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 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u></p> <p><u>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 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화·전신·팩 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 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 사되지 아니하였을 것</u></p> <p><u>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 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u></p> <p><u>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 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 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u></p>	<p>개정 자본시 장법 및 시행 령 반영</p>

		<p><u>일 것</u></p> <p><u>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u></p>	
<p>제 5 부. 1. 가. (2) ③ 연기수익자총회</p>	<p>- <u>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u>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p> <p>-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u>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u>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u>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u> 결의합니다.</p>	<p>- <u>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u>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p> <p>-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u>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u></p>	
<p>제 5 부. 1. 가. (3) 투자 자총회 결의사항</p>	<p>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u>(추가)</u></p>	<p>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p> <p>① <u>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u></p> <p>② <u>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 합병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u></p> <p>③ <u>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u></p>	

		<p><u>④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p> <p><u>⑤ 투자신탁의 합병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제외)</u></p>
제 5 부. 1. 가. (4) 반대 매수청구권	<p><u>법 제188조제2항각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u></p>	<p>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p> <p><u>①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u></p> <p><u>②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u></p>
제5부. 1. 라. 손해배상책임	<p>해당 증권의 <u>인수계약을 체결한 자</u>,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u>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u></p>	<p>해당 증권의 <u>인수인 또는 주선인</u>,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u>매출인</u></p>
제 5 부. 3. 가.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p><u>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u></p>	<p><u>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u></p>
제 5 부. 3. 가. (2) 자산	<p>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p>	<p>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p>



<p>운용보고서</p>	<p>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u>으로 표시한 경우</p>	<p>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u>으로 표시한 경우</p>	
<p>제 5 부. 3. 나. (1) 신탁 계약변경에 관한 공시</p>	<p>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p> <p>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b>(추가)</b></p>	<p>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 및 <b>법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b>)</p> <p>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b>(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b></p>	
<p>제 5 부. 3. 나. (3) 집합 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p>	<p>-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p> <p>-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p> <p>-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p>	<p>-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b>및 그 사유</b></p> <p>-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b>및 그 사유</b></p> <p>-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p>	

프랭클린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1호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문서전반	<u>프랭클린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1호</u>	<u>프랭클린 클래식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u>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b>(추가)</b>	<b>2014년 3월:</b> <u>펀드명칭 변경 : 프랭클린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1호 → 프랭클린 클래식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u>	펀드 명칭 변경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정보 갱신

제2부. 13.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제4부. 1. 라. 운용자산규모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프랭클린템플턴 파워리서치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문서전반	프랭클린템플턴 파워리서치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프랭클린 파워리서치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펀드 명칭 변경
	프랭클린템플턴 파워리서치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프랭클린 파워리서치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이 펀드에서 투자하는 모펀드의 명칭 변경 반영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 반영
제2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b>2014년 3월:</b> 펀드명칭 변경 : 프랭클린템플턴 파워리서치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프랭클린 파워리서치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펀드 명칭 변경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정보 갱신
제2부. 8. 나. 투자 제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이하 생략)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이하 생략)	개정 자본시장법 반영
제2부. 13.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u>금융비용 및</u>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u>발행분담금 총액 중 회계기간 초일부터 2013.8.28.까지의 부분은 펀드가 부담하고, 2013.8.29. 이후 분은 자산운용사가 부담</u> )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 반영

<p>제2부. 14. 나.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p>	<p>중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에 의하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b>2013년 12월 31일까지</b>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p>	<p>중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에 의하여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b>2014년 12월 31일까지</b> 발생한 과세 이익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신규로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p>	<p>손익상계 연장</p>
<p>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p>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p>정보 갱신</p>
<p>제4부. 1.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amp; 라. 운용자산규모</p>	<p>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p>		<p>정보 갱신</p>
<p>제4부. 6. 가. 회사의 개요</p>	<p><u>나이스채권평가</u> <a href="http://www.nicepricing.co.kr">www.nicepricing.co.kr</a></p>	<p><u>NICE P&amp;I</u> <a href="http://www.nicepni.com">www.nicepni.com</a></p>	<p>채권평가회사 사명 변경 반영</p>
<p>제 5 부. 1. 가. (2) ② 의결권 행사방법</p>	<p>-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p> <p>-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p>	<p>-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p> <p>-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p>	<p>개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반영</p>

	<p>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p> <p><u>(추가)</u></p>	<p>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 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u>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 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u></li> <li><u>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u></li> <li><u>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u></li> <li><u>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u></li> </ol>	
<p>제 5 부. 1. 가. (2) ③ 연기수익자총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합투자업자는 <u>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u>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li> <li>-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u>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u></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합투자업자는 <u>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u>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li> <li>- 연기수익자총회에서는 <u>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u></li> </ul>	

	<p><u>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u></p>	<p><u>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u></p>	
<p>제 5 부. 1. 가.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p>	<p>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u>(추가)</u></p>	<p>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p> <p>① <u>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u></p> <p>② <u>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u></p> <p>③ <u>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u></p> <p>④ <u>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p> <p>⑤ <u>투자신탁의 합병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제외)</u></p>	
<p>제 5 부. 1. 가. (4) 반대매수청구권</p>	<p><u>법 제188조제2항각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u></p>	<p><u>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u></p> <p>① <u>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u></p>	

	<u>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u>	<u>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u> <u>②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u>	
제5부. 1. 라. 손해배상책임	해당 증권의 <u>인수계약을 체결한 자</u> ,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u>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u>	해당 증권의 <u>인수인 또는 주선인</u> ,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u>매출인</u>	
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u>(추가)</u>	<u>※ 소규모투자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법제89조제1항제5호 및 제192조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관련 법령 및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에 명시된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보하며, 임의해지가 결정된 경우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 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합니다. 판매회사는 상환금등을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아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u>	개정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 반영
제 5 부. 3. 가.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③ <u>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u>	③ <u>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u>	개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반영
제 5 부. 3. 가. (2) 자산운용보고서	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u> 으로 표	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u>서면, 전</u>	

	시한 경우	<u>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u> 으로 표시한 경우
제 5 부. 3. 나. (1) 신탁 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p>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p> <p>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b>(추가)</b></p>	<p>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6조에서 정한 사유 <u>및 법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외</u>)</p> <p>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b>(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b></p>
제 5 부. 3. 나. (3) 집합 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li> <li>-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li> <li>-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u>및 그 사유</u></li> <li>-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u>및 그 사유</u></li> <li>-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li> </ul>

### 3. 효력 발생일

2014년 3월 28일

자세한 내용은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